

예천군 공고 제2018-910호

2018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

경상북도 에너지 조례 제15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규정에 의한 「2018년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」에 참여하고자 하는 희망자(공동주택)에 대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0월 12일

예 천 군 주



1. 지원사업 개요

- 가. 지원대상 : 예천군 소재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로 설치희망자
- 나. 사업규모 : 총 330가구(331,650천원)
- 다. 지원설비 : 가구당 소형 태양광 300W
※ 태양광 모듈, 마이크로 인버터, 모니터링장치, 모듈거치대 등
- 마. 보조금액 : 설치용량 1W × 2,010원(가구당 설치금액의 최대 75%지원)

2. 보조금지원 대상

- 가. 대 상 :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(별표1)에서 규정한 공동주택(아파트)
- 나. 방 법
 - 공동주택 : 신청세대 수합 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가 제출
 - 단독주택 : 세대주가 신청
- 다. 접 수 처 :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지역경제담당(우편 또는 방문)
- 라. 지원금액 : 500W기준 최대 1,005천원

에너지원	설비 용량 (예시)	2018 예상 설치 및 지원 금액 (VAT포함, 단위 : 천원)				
		계	국 비 (25%)	도 비 (15%)	시 비 (35%)	자부담 (약25%)
태양광	300W	603	151	91	211	151

※ 국비 지원기준에 따른 것으로 설치비용증감에 따라 자부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.

3. 접수기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19.

4. 신청 제출서식 (붙임 신청서 양식 활용)

순	읍면동	공동주택명	주소(동/호)	신청자	용량
1	**동	OO아파트	**동 **호	OOO	300W
2	**동	OO아파트	**동 **호	OOO	300W
...	**동	OO아파트	**동 **호	OOO	300W
		OO아파트 관리사무소/입주자 대표		**가구	

5. 유의사항

- 가. 2017년 수요조사에서 읍면동에 수요를 제출한 공동주택(231가구)도 확정된 명단을 포함하여 제출
- 나. 그 외 공동주택은 예산범위 내 선정가능 시 선착순 및 신청가구가 많은 순으로 선정
- 다.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므로 남향 위주로 수목 등 장애물에 의한 음영이 없어야 하며 모듈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.
※예상 설치 공간 : 1640×998×35(300W 기준)
- 라. 시공업체 외의 업체 선정 시 국비 보조금 미지급
- 마.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요(설치 후 5년간 이설 불가능)
- 바. 설치 후 5년간 시공업체에서 관리 → 이후 15년간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며, 미니태양광 모듈의 추락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은 세대주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- 사. 유리창 부착형 미니태양광 모듈(BIPV) 3~4년 안에 상용화 예정 (안전성과 효율성에서 기존의 모듈보다 우수)
- 아. 선정 후에는 보조금수령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 위임장 제출에 협조하여야 하며, 사업 전·후의 가구별 에너지사용현황자료가 사업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고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권리는 예천군으로 귀속됨.

6. 시공업체

업 체 명	전화번호	비 고
(주)세한에너지	053-381-2142	
(주)서보	053-564-6000~4	
(주)한남전기 통신공사	053-741-0100	

※ 미니태양광 시공업체별 설치제품 상세 현황 : 붙임 참조

※ 단독주택 시공업체 : (주)세한에너지

7. 문의처

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 새마을경제과(☎054-650-685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